

기업성장을 촉진·지원하는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평가인증 전문기관

기업성장지원실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지식재산 NO.1 파트너 KIPA www.kipa.org







CONTENTS

기업성장지원실	
기업성장지원실 소개	03
기업성장지원실 연혁	04
기업성장지원사업	06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07
기술평가	08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	10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PQ)	11
기술융합건설팅 활용 사례	12
업무협력기관 현황	13
유관기관 및 고객사	14
[부록]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소개	15
한국발명진흥회 연혁	16
KIPA 주요사업	17
본사·지부·지역지식재산센터 위치 문의 및 상담 연락처	19

기업성장지원실 소개

기업성장지원실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개인의 창업부터 상장까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u>Θ</u>

전문성

다양한 분야의 평가·컨설팅 모델 개발 경험 및 전문인력 보유

공신력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정부 공인 기술평가 전문기관 국내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평가인증 전문기관





기업친화

기업 니즈에 맞춘 <u>성장 사다리</u> 다각화

| 전문인력 보유현황 |

- 내부 전문인력으로 변리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약학박사, 경영학박사, 기술거래사 등을 보유
- 특정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인력(변리사, 기술사, 회계사, 교수, 박사 등 500여 명의 전문가)을 활용

정부공인 기술평가기관

기업성장지원실 연혁

2001 - 2010

관계법령

-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3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 2001 특허기술평가실 설치
 - 기술평가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 2003 발명의 평가기관 (특허청)
- 2005 특허권 등 산업재산감정기관 인정 (국세청)
- 2006 벤처기업 확인평가기관 (중소기업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2007 히든챔피언 육성지원기관
 - 히든스타 육성지원기관
 - 월드클래스 300 육성지원기관



기업성장지원사업

기업성장지원실은 기술 기반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 기술평가, 건설기술활용실적 관리 등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 »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술특례 요건 부여를 위한 기술성 전문평가 수행
- ※ 한국발명진흥회는 2022년 6월부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



- » 전문평가기관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3가지로 구분
 - 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중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전문평가 담당
- ※ 한국발명진흥회는 2021년 2월부터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

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 » 대상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 »기술평가는 성공 가능한 기술을 선별 (Screening)하고, 성공가능성의 확실성 정도 를 분석하여 예측(Assessment)하거나, 가치 의 크기를 측정(Valuation)하는 과정을 뜻함
- ※ 한국발명진흥회는 2001년 9월부터 기술평가 기관으로 지정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PO)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과 같은 건설업무에서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을 확인하여 건설 등 사업자의 조달 입찰 가점 획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한국발명진흥회는 2008년 9월부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개시

기술평가는 대상기술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정한 평가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제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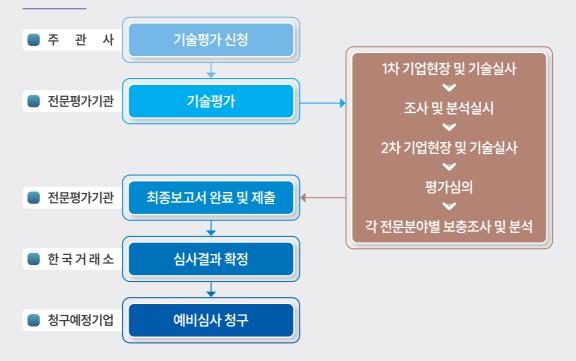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지닌 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술력 평가로 기업 자금 조달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 사업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개 **요**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기술 보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
- 청구조건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BBB등급 이상일 경우 상장 예비심사 청구자격 부여
- 수행기간 평가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국내기업 30일, 해외기업 45일 이내 소요
 - ※ 신청기업의 사정 등으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확인절차



기술평가

대상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제공합니다.

기술평가는 성공 가능한 기술을 선별(Screening)하고, 성공가능성의 확실성 정도를 분석하여 예측(Assessment)하거나, 가치의 크기를

측정(Valuation)합니다.



사업근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술평가기관 지정.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등

기술가치평가

정 의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

평가결과 금액

평가대상 기술사업아이템

기술력 평가

정 의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의 인력, 조직,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주체의 기술개발, 흡수 및 혁신능력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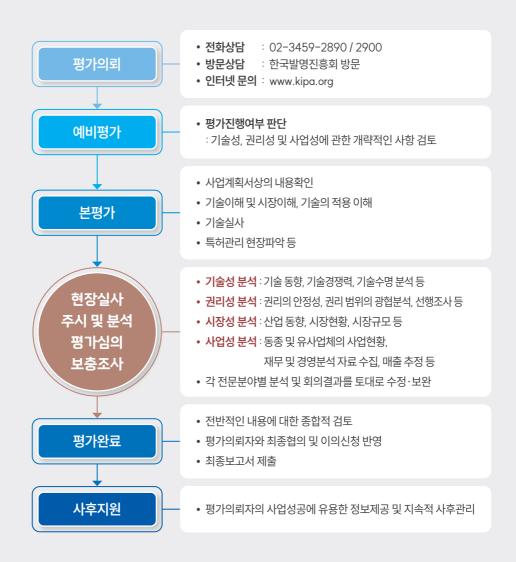
평가결과 등급 / 점수

평가대상 기술 자체의 가치나 효과가 아니라 기술의 사용주체가 지니고 있는 능력 (기술은 기술력의 일부)





수행절차



활용방법

목적	주요 내용	평가방법
이전 및 거래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시 적정가액 제시	
금융및투자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현 물 출 자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시 적정가액 산정	• 수익접근법
전 략	혁신형 기업 M&A, 가치증진, 분사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 비용접근법
청 산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시장접근법로열티공제법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분쟁관련 소송	• rNPV법
세 무	기술의 기증, 처분, 감가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수립 및 세금납부	
기 타	직무보상금 산정 등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혁신성장유형 전문평가기관으로서 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혁신성장유형

사업근거 「중소기업 기본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확인요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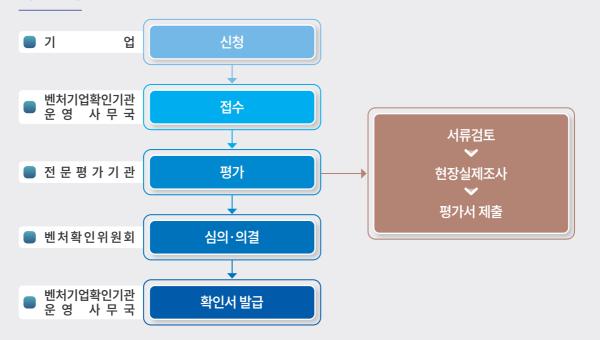
개 요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발굴·확대**하여 산업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제도

평가사항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간 혁신성장유형 벤처확인평가는 접수완료(수수료 납부) 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 신청기업의 사정 등으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확인절차



⁻ 상세 내용은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PQ)

건설 등의 사업자 조달입찰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전(Pre)에 건설기술(특허, 실용신안)을 활용한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등 건설산업의 품질(Quality)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PQ)

사업근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개 요 "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건설업무에서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을 확인하는 제도

사업대상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을 활용한 용역을 수행해야 하고
- 3) 실적 구분이 건설사업관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실용신안의 최초출원인이어야 건설기술 활용실적 신고가 가능

(즉, 위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신고가 가능함)

심사기간 2주일

※ 신청기업의 보완서류 지체 등으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화인절차



- 상세 내용은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시스템(http://www.kipa.org/pq)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융합컨설팅 활용 사례

1) 기술평가

기업개요	용도	활용사례
기술거래시 적정가격 산출이 필요했던 A사	기술거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양도
자본금 증자가 필요했던 B사	현물출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본금 증자
특허 취득 후 사업화 자금이 필요했던 C사	자금유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성공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D사	특허소송	법원에서 주된 판단 자료로 사용
보유 특허기술의 제품화 여부를 고민하던 E사	사업전략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추진/성공 - 기업가치 및 주가 상승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이 필요했던 A사	직무발명 보상금산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금 산정
조인트벤처/M&A 진행예정 B사	경영전략수립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합작투자 진행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감사 처리가 필요했던 C사	회계감사 처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유 특허기술 가치금액 제공
제품에 대한 특허적용확인이 필요했던 D사	특허적용 확인	공공기관에서 주된 판단 자료로 사용
보유 특허기술의 제품화 홍보를 고민하던 E사	마케팅 활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활용

2) 벤처기업확인평가

기업개요	용도	활용사례
최근 제품사업화로 영업이익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 A사	혁신성장유형	법인세·소득세 최대 5년간 50% 감면

업무협력기관 현황

기술사업화(기술평가·컨설팅) 관련 업무협력기관 현황

순번	업무협약 체결연도	기관명(기관 중복일 경우 세부내용)
1	2025	세종테크노파크
2	2025	부산테크노파크
3	2025	경북테크노파크
4	2024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5	2024	충북테크노파크
6	2024	전북테크노파크
7	2023	오션토모(미국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8	202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9	2023	부산대학교기술지주(주)
10	2022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 재지정)
11	2022	한국거래소(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
12	2022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3	202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4	2021	홍릉강소특구사업단
15	202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16	2021	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
17	2021	인터밸류파트너스(주)
18	2020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주)
19	2020	한국거래소(코넥스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
20	2020	(주)브릿지폴인베스트먼트
21	2020	한국방사선진흥협회
22	2020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3	2020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4	2020	(주)피앤피인베스트먼트
25	2019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26	2019	가톨릭관동대학교기술지주(주)
27	2019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8	2019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29	2019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30	2019	㈜신한은행
31	2019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32	2019	전북대학교LINC+사업단
33	2018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34	2018	서울창업허브
35	2018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36	2018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37	2018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38	2018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39	2017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40	201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41	2017	(쥐광주연합기술지주
42	2016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BIZ)
43	2016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u>유관기관 및</u> 고객사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기업



법무법인 및 법원



[부록] 한국발명진흥회 소개

설립근거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 52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써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국내 지식재산사업을 보호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미션 비전



핵심가치 —



한국발명진흥회 연혁



기업의 가치를 키우다

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의 지식재산이 체계적으로 사업화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래를 이끌 혁신인재를 양성하다

생애 전주기를 아우른 지식재산 전문교육으로 발명 꿈나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사업가로 성장할 차세대 영재기업인, 현장 실무형 지식재산 전문인재 등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발명문화로 세계시장을 개척하다

발명이 일상화되고 발명가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발명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우수 발명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와 글로벌 기술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식재산 콘텐츠를 개발해 지식재산 한류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IP금융 및 사업화 지원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예비창업자 및 글로벌 IP기업 육성



기술평가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IP-Market)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5)



특허가치평가시스템 (SMART VIX)



발명교육센터 운영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지식재산 캠퍼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오프라인 교육, IP Campus) (온라인 교육, www.ipacademy.net)



직업계고 발명교육 운영



국가공인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대회



발명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국제발명전시회 출품 주관 (스위스, 독일, 태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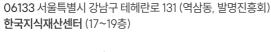
글로벌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IP파노라마, 발명왕 뽀로로 등)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ODA 사업 등)

본사·지부·지역지식재산센터 위치

서울 본사 주소



주요 연락처

KIPA본회

02-3459-2800

강원지부

033-254-6555

대전지부

042-933-7811

세종지부

044-998-7771

전북지부

070-7775-2622

광주지부

062-604-9252

부산지부

051-714-6952



기술컨설팅 등 사업 문의 및 상담 연락처 02) 3459-2890 / 02) 3459-2900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 2호선 역삼역 하차 (4번출구, 직진 200m)
-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하차 (12번출구, 직진 400m)

버스 이용

• 역삼역, 역삼역·포스코타워 역삼 정류장 하차 (146, 341, 360, 740, 1100, 1700, 2000, 2000-1, 3600, 7007, 9303, 8001)



기업성장을 촉진·지원하는 지식재산·기술사업화평가인증전문기관

기업성장지원실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지식재산 NO.1 파트너 KIPA www.kipa.org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기업성장지원실 사업문의 및 상담 연락처**: 02)3459-2890/2900